#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89 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 박충권·김승수·임이자

김위상 · 김성원 · 서지영

김선교 • 권성동 • 이인선

김소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,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,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.

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,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·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스크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.

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,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89조 및 제124조).

법률 제 호

##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"를 "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2항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4. 동의의결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제12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제89조제2항제4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동의의결 신청 시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9조(동의의결) ① 공정거래위	제89조(동의의결) ①
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	
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(이	
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	
정에서 "신청인"이라 한다)는	
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	
는 행위(이하 이 조부터 제91	
조까지의 규정에서 "해당 행	
위"라 한다)로 인한 경쟁제한	
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, 소비자	
피해구제, 거래질서의 개선 등	
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	
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	
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. 다	
만,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	
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	
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	
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제2항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
	<u>지 아니한 경우</u>
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	2

청을 하는 경우 <u>다음 각 호의</u>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 • ④ (생 략)

제12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(생략)

					- <u>제</u>	1호부	나터
<u>제</u> 3	<b>)</b> 호カ	가지의	사	항을	7];	재한	서
<u>면</u>	및	제4호	의	서류	를	제출	흔하
여 (	<u>}</u>						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동의의결 신청일 직전 6개월
 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
  및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
  등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자
  발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증명
  하는 서류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
제124조(벌칙) ①	_
	_

- 1. ~ 13. (현행과 같음)
   14. 제89조제2항제4호의 서류를
   거짓으로 작성·제출한 자
- ② (현행과 같음)